

## 대통령령 제 13,699 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이 시행하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사업물량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별, 영양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조(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절차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연도별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 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위험물저장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②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 중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⑤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1. 특별시·직할시 및 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제 5 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제 6 조(개선부담금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다만,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3.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4. 종교시설
5.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및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8.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전용시설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의료시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재활시설

12. 시설물의 일부가 분할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분할소유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 및 국제기구(그 직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다만, 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방·청소·오물제거·환자수송·헌혈·우편 및 전파관리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3.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 7 조(개선부담금의 경감) 별표2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 8 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③ 환경처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① 환경처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제 11 조(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처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은 총리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 13 조(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법 제10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14 조(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되, 사용량별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고, 자동차는 반기별 8,1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에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 15 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별

표4와 같고, 연료계수·차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량계수는 별표 7과 같다.

제 16 조(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동일 시설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사용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 시설물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시설물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한다.

제 17 조(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질 오염유발계수의 적용방법)  
①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와 표준용수 사용량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오염유발계수를 오염유발계수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11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4.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5. 기타 환경처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 19 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 실시시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위안에서 정한다.

1. 계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비

6.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그밖의 물건으로서 당해 사업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얻어지는 총 수입금을 뺀다.

제 20 조(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당해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1 조(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원인이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사업의 종류

5.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제 22 조(방지사업부담금 부과징수절차등) 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납부기간·납부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기타 방지사업의 종류)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과 특정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3.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퇴적오니준설사업 및 오·우수분리 관거의 설치사업
4.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의 퇴적오니준설사업. 다만, 항만의 개설준설사업 및 유지준설사업을 제외한다.

제 24 조(방지사업의 위탁시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단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위탁요율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5 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시행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에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7.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6 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부담금의 징수위탁) ① 환경관리공단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방지사업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담자의 성명·주소·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없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8 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시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199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 제1호 중 “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 2 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 5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부과대상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용도	규모
1	가. 위탁시설중 일반유희음식점(전문음식점, 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무도유희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중음식점	160m <sup>2</sup> 이상
2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수영장 나.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240m <sup>2</sup> 이상
3	가.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관람장 나. 전시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다. 판매시설중 상점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270m <sup>2</sup> 이상
4	가.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나. 의료시설중 병원, 격리병원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점골원·조산소 라.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도서관	380m <sup>2</sup> 이상
5	가. 위탁시설중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나. 위탁시설중 특수목욕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세탁소 라.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410m <sup>2</sup> 이상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위 표는 사업자별·용도별로 구분하여 규모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선부담금의 경감대상 법인·단체 (제7조 관련)

1.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 및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6.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7.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0.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
11.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13.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5. 산림조합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

림조합중앙회

1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8.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 및 한국전산원
19.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료기관에 한한다)
2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
2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갯생보호법에 의한 갯생보호회
24.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별표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제8조 제1항 관련)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기 간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2월 16일부터 2월 말일까지

(별표 4)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제12조 제2항 및 제15조 관련)

용 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l/m <sup>2</sup> )	용수사용량 (톤/m <sup>2</sup>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일용품등의 소매점	1.29	0.95	1.00
나. 일반목욕장	0.12	60.00	26.30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l/m <sup>2</sup> )	용수사용량 (톤/m <sup>2</sup> )
다. 의원·치과의원 · 한의원·침술원 · 접골원·조산소	0.34	2.00	2.76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대중음식점	0.55	8.25	5.76
나. 안마사술소	0.15	30.00	13.15
다. 금융업소·사무 소·부동산중개업 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	2.10	0.07
라.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마. 의료시설	0.34	2.00	2.76
3.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교육원	0.67	2.00	1.38
다. 기타 교육연구시 설	0.67	4.00	2.76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0.67	4.00	2.76
나. 실내수영장	0.67	30.00	20.60
5. 업무시설, 근린공공 시설, 방송·통신시 설, 동물관련시설	1.00	2.10	0.70
6. 숙박시설	0.38	4.23	3.5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소매 시장	1.29	1.90	2.00
나. 상점	1.29	0.95	1.00
다. 해산물 도소매 공동판매장	0.65	1.90	2.00
8. 위락시설			
가. 일반유흥음식점 · 무도유흥음식점 ·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	0.55	8.25	5.76
나. 특수목욕장	0.20	60.00	26.30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l/m <sup>2</sup> )	용수사용량 (톤/m <sup>2</sup> )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영화관 제외), 집회장	1.29	0.63	0.67
나. 공연장중 영화관	1.29	1.90	2.00
10. 전시시설	1.29	0.63	0.67
11. 운수시설			
가. 화물터미널	0.67	2.00	1.38
나. 기타 운수시설	0.67	4.00	2.76
12. 관광휴게시설			
가. 휴게소	0.85	6.60	2.00
나. 기타 관광휴게시 설	0.85	2.20	0.67
13.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자동차관련 시설·묘지관련시설	0.85	2.20	0.67
14. 기타시설(비고 2 에서 정하는 용도는 제외한다)	0.85	2.10	0.70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  
설·청소년시설 : 숙박시설

나. 종교시설 : 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별표 5) 액체연료환산계수(제13조 관련)

연료 종류	LNG (Sm <sup>3</sup> )	LPG (kg)	경유 (l)	증유 (l)	무연탄, 신 탄 (kg)	유연탄 (kg)
환산 계수	1.14	0.76	1	1.08	0.49	0.72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6)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제14조 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경우

구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l/반기)	기준부과금액 (원/l)
1	1,000이하	13
2	1,000초과~ 2,000까지	15
3	2,000초과~ 4,000까지	16
4	4,000초과~ 6,000까지	18
5	6,000초과~ 10,000까지	20
6	10,000초과~ 20,000까지	22
7	20,000초과~ 100,000까지	24
8	100,000초과~ 600,000까지	27
9	600,000초과	29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분	용수사용량 (톤/반기)	기준부과금액 (원/톤)
1	400이하	79
2	400초과~ 800까지	87
3	800초과~ 1,600까지	97
4	1,600초과~ 2,400까지	108
5	2,400초과~ 4,000까지	120
6	4,000초과~ 8,000까지	132
7	8,000초과~ 40,000까지	145
8	40,000초과~ 240,000까지	160
9	240,000초과	176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15조 관련)

1. 연료계수

연료 종류	LNG LPG	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 유연탄
		저유황 (0.2% 이하)	저유황 (0.2% 초과 0.4% 이하)	고유황 (0.4% 초과 1% 이하)	저유황 (1% 이하)	저유황 (1% 초과 1.6% 이하)	고유황 (1.6% 초과 4% 이하)	
연료 계수	0.16	0.87	1.00	1.40	1.62	2.03	3.67	3.67

비고 :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연료계수를 적용한다.

2.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이하	1.00
2,000초과~ 2,500이하	1.25
2,500초과~ 3,500이하	1.75
3,500초과~ 6,500이하	2.64
6,500초과~10,000이하	4.50
10,000초과	5.00

3. 지역계수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시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시지역
지역계수	2.07	1.00	0.68	0.67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다. 자동차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차령계수

차령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차령 계수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 環境改善費用負擔法施行令 制定理由

環境改善費用負擔法이 制定(1991. 12. 31, 法律 第4493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定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環境改善中期綜合計劃의 效率的인 施行을 위하여 關係機關의 長은 前年度 推進實績을 매년 1월 31日까지 環境處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環境處長官은 이를 綜合·分析하여 그 結果를 매년 2월 末日까지 關係機關의 長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3條).
- 나. 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施設物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流通·消費와 관련되는 建物로 하되,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도 汚染要因이 큰 業種에 대하여는 賦課對象으로 함(令 第4條 第1項 및 第2項).
- 다. 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經由自動車의 범위를 自動車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自動車로 하되, 運送事業用 自動車의 경우에는 1996年 7월 1日부터 賦課하도록 함(令 第4條 第4項 및 附則 第2條 但書).
- 라. 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地域은 施設物의 경우 市이상 地域과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地域 및 觀光休養地域으로 하고, 自動車는 全國을 대상으로 함(令 第4條 第5項).
- 마. 環境改善負擔金이 免除 또는 輕減되는 對象을 定함(令 第6條 및 第7條).
- 바. 環境改善負擔金의 납부통지를 받은 者는 그 調整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 사. 負擔金算定에 필요한 燃料 및 用水使用量은 實使用量에 의하여 算定하되, 實使用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標準燃料 및 標準用水使用량을 適用하도록 함(令 第12條).
- 아. 工團 등 事業場이 密集되어 汚染이 深化된 地域에서 실시하는 環境汚染防止事業의 費用중

汚染原因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의 범위를 計劃調查費·工事費·管理費 등으로 함(令 第19條).

자. 原因者別 費用負擔金基準은 原因者費用負擔總額에 각 原因者別 事業場規模, 汚染物質의 量과 質 등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함(令 第21條).

차. 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함(令 第28條).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40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제출절차 등)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되,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조(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 ① 환경처장관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위원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2.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3. 사업규모 및 물량
4. 사업간의 연계성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 5 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와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영 제9조 제2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 8 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계량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계량기
2. 기타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제 9 조(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오염유발계수는 각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에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각 용도별 표준용수사용량에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10 조(사업계획승인의 신청) ① 시행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실시의 필요성
  2. 방지사업의 종류
  3. 시설용량·설치면적·총소요사업비 등 방지사업의 규모
  4.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5.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
  6. 예상원인자의 범위
  7.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8. 연차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방지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은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원인자의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동일 읍·면·동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12 조(사업계획의 고시) 환경처장관이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3. 사업계획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4.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 13 조(사업계획서의 열람) ①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30일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서식)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